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변 호	307
------------	-----

발의연월일 : 2024년 5월 14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안 제3조)

다. 임원 및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 보완(안 제4조)

라. 단장 또는 단원의 해임 및 해촉 근거 추가(안 제5조)

마. 소집수당 근거 마련(안 제8조)

바. 교육 및 훈련 시간 조정(안 제14조)

사. 재해보상 규정 신설(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 및 제65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나. 예산조치 : 소집수당(16,288천원), 재해보상금(3,000천원) 예산 가편성

다. 사전협의 : 도시안전과

라. 입법예고 : 2024. 5. 17. ~ 2024. 5. 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동 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제7항에 따른 동 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 ④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기업체·기관·학교 등(이하 “단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 ⑤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방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동 대표”라 한다)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 ⑧ 동 방재단의 운영은 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④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단장 또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 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7.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8.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9. 재해 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④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을 나누어 구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⑤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9급 일반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한다.

⑤ 제8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

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① 단장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③ 제2항 각 호의 경비 및 물품에 관한 지급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 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3조(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
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 연 4시간 이상

2. 훈련 :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위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거쳐 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임명장

주소

성명

귀하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개인>

(제3조제5항 관련)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단체>

(제3조제5항 관련)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조,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붙임]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게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illegible]

(제9조제1항 관련)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 확인자는 동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 활동확인서는 단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증빙서류 첨부 후 단장에게 제출

[별지 제4호서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제9조제2항 관련)

등록 번호	반 명	성 명	활동 제목	활동상황		봉사 시간	비고
				활동일자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붙임]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제10조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월 별	주 요 내 용	비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안전과 연계하여 작성

출 입 증
(제13조 관련)

출 입 증	지역자율방재단원증
사진 3×4	NO. 000혈액형 형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 .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인)

5.5cm

7.7cm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